

전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126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나1263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250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원

담당변호사 최민중

변론종결 2022. 8. 31.

판결선고 2023. 1. 1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2508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6.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6.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뚜렷한 반증이 없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김범준, 판사 신태광

별지